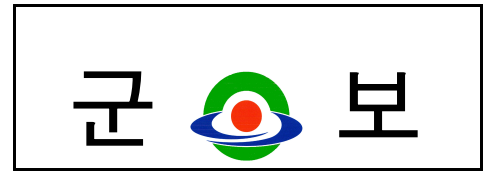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203호 2019. 11. 11.(월)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369호)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370호)
- 예천군 귀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371호)
-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372호)
-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373호)
- 예천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374호)

규 칙

- 예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예천군 규칙 제1266호)
- 예천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예천군 규칙 제1267호)

훈 령

- 예천군 통계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예천군 훈령 제417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1월 1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69호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호까지”를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7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대상”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참전 유공자 미망인”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고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당을 증액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지원 사업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에서 제18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로 확대 시행(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 나. 보훈명예수당(월7만원→월10만원) 증액 (제8조제2항)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1월 1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70호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7만원”을 “1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증액하여 참전유공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월 7만원→월 10만원) 증액 (제4조제1호)

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월 3만원→월 5만원) 증액 (제4조제2호)

예천군의회의에서 의결된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1월 1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71호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를 “예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40조에 따른”을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귀농자”를 “귀농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귀농인”이란 65세 이하이면서 이주하기 직전에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던 사람으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예천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귀농자”를 “귀농인”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귀농자 지원 체계”를 “귀농인 지원 체계”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귀농자”를 “귀농인”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귀농업무 담당주사가”를 “귀농 업무 담당 팀장이”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귀농자”를 각각 “귀농인”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귀농자에 대한 지원”을 “귀농인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귀농자가”를 “귀농인이”으로 하고, 제2항 중 “귀농자”를 “귀농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귀농자”를 각각 “귀농인”으로 한다.

제8조 중 “귀농자가”를 “귀농인이”으로 한다.

제9조 중 “귀농자”를 “귀농인”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귀농자”를 “귀농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귀농자가”를 각각 “귀농인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년”을 “각 지원사업별 사후관리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귀농자로”를 “귀농인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농자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귀농자는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귀농인으로 본다.

◇개정이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19.7.1.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귀농인 지원에 관련한 사후관리 기간을 각 사업별 지침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나. 목적 내 근거 상위법 변경

○ 농업·농촌 및 식품기본법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 귀농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 수정 (제2조)

○ 만 55세 미만인 자 → 만 65세 이하이면서 이주 직전 1년간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

라. 귀농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 변경 (제11조제1항제2호)

○ 지원 후 5년 이내 → 각 사업별 사후관리기간 이내

-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10년 ± 3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 장비 : 5년 ± 2년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1월 1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72호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관리는 법 제3조”를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대상지안”을 “대상지 안”으로 한다.

제7조 중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한다.

제15조제4호나목 중 “지구단위계획외”를 “지구단위계획구역 외”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의2호에”를 “별표 1의2 제1호에”로 한다.

제1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
생물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자생하지 않거나, 생물종(生物種)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 외의 지역

제18조제8호 중 “경사도가 30도”를 각각 “평균경사도가 25도”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지방”을 “지반”으로 한다.

제20조제1호 전단 중 “「먹는 물 관리법」”을 “「먹는물관리법」”으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을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토지분할 제한 면적)”을 “(토지분할 허가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천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별표 26”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신청서 1부.
2. 분할측량성과도 1부.
3. 다음 각 목의 토지분할 목적에 따른 근거서류 1부.

가. 매매의 경우 : 매매계약서

나. 공유물의 분할의 경우 : 분할계약서(동의서)

다. 증여의 경우 : 증여계약서

라. 교환의 경우 : 교환계약서

마. 판결의 경우 : 판결문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2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이 조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를 말한다.
 2.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3. "철도"란 법 제43조에 따라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철도를 말한다.
 4. "자연취락지구"란 영 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5. "10호 이상의 주거지"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총 호수가 10호 이상인 지역으로서 각 주택부지 지적 경계에서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산정하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1호로 한다.
 6.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법 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지역 중 관광휴양형으로 그 유형이 정해진 지역을 말한다.
 7. "발전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을 말한다.
- ②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리 기준은 지역·지구·구역 및 가장 가까운 필지 경계로부터 직선으로 산정한다.
1.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다만, 군도의 경우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내성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그 외 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철도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지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10호 미만의 주거지의 경우 각 주택부지 지적 경계에서 15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본인 소유의 주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제18조제8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은 평균경사도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경사도 15도 초과 지역이 전체면적의 4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③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높이 2미터 이상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고,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인접토지 재해 예방 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도로구역 또는 하천구역 안에서 해당 관리청의 점용허가 등을 득하고 설치하는 경우
 4.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물(이하 “해당 건축물”이라 한다)의 대지 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에 해당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대지가 있는 경우(신청인 본인 소유의 건축물은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5. 제4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2미터를 넘지 않을 경우
- ⑤ 3년 이상 예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3년 이상 소유(본인 및 2촌 이내의 가족 소유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농지를 이용하여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이고 설비용량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리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규모 발전시설 상호간 100미터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 ⑥ 제5항 단서는 개발행위허가가 준공된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⑦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정온시설(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병원,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에서부터 1,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지 경계로부터 1,500미터(10호 미만의

경우 1,0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중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를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호”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을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종 자연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의 제목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을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8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종 자연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특화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의 제목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를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을 “영 제76조제2호”로, “공용시설보호지구”를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항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3항 중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5호”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59조의2 제3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5.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제62조제4항 중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5호”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68조제3항 중 “건축도시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법 제113조제5항”을 “법 제11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영 제113조의2 제1항”을 “영 제113조의2”로 한다.

제71조 중 “도시계획업무담당 주사가”를 “도시계획팀장이”로 한다.

제75조의5 제4항 중 “군 소속공무원과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예천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를 “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로 한다.

제75조의7 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예천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이”을 “「지방공무원법」 및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라목 중 “나목 및 다목”을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 하되, 유스호스텔”을 “유스호스텔”로 하며, 같은 호 차목(3), (4) 및 카목(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4 제2호다목 중 “나목 및 다목”을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을 “유스호스텔”로 하며,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 제2호다목 중 “나목 및 다목”을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을 “유스호스텔”로 하며,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 제1호나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
게임제공업의 시설

별표 6 제1호사목(중전의 바목) 중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를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제1호마목”을 “제1호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가축시설”을 “가축시설(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7 제1호바목 중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를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8 제1호라목 중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를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 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9 제1호마목 중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를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 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0 제1호사목 중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를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2 제2호자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를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제1호마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를 “수련 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제2호아목(3) 및 (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6 중 제1호사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 한다)”를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6 제2호차목(2) 중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를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 내에서”로 한다.

별표 18 제2호아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를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제2호자목(3) 및 (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자목, 같은 목 (1), 같은 목 (2)(마), 같은 목 (5)(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2), (5)(라)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호 자목(6)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20 제2호바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를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1 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별표 22 제2호자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를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4 각 호 외의 본문 및 각 호 외 주 4) 중 “세대수가 10호 이상인 지역으로서

행위허가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세대수가 10호 이상인 마을을 말한다.”를 “ 호수가 10호 이상인 지역으로서 행위허가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산정하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1호로 한다.”로 한다.

별표 2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자는 제24조의2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발전사업허가를 득할 당시의 사업대상지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26】

토지분할 허가기준

1. (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가. “택지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 나. “바둑판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 다. “기획부동산”이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하여 광고 등을 통해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기획부동산의 판단기준) “기획부동산”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로 분할하려는 자(재분할의 경우 재분할 전 지적 기준)
 - 나.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여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 자
3. (적용범위) 법, 령, 규칙,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별표에 따른다.
 - 가. “기획부동산(추정되는 업자 등을 포함한다)”의 토지분할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4. (토지분할허가 기준) 토지분할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 가. 용도지역 별 분할제한면적은 다음과 같다.
 - (1) 녹지지역 : 990제곱미터 이상
 - (2)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1,650제곱미터 이상
 - (3) 계획관리지역 : 990제곱미터 이상

(4)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1,650제곱미터 이상

(5) 임야의 경우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

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라.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가능 필지는 1년 내 총 4필지 이하여야 한다.

마. 가목에도 불구하고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1필지를 2필지로 분할 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임야인 경우는 제외한다.

5. (공유지분 분할허가)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이유

- 토지분할 및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정비하고,
- 용도지구의 통·폐합, 명칭 변경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 반영,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 (제18조)

- 경사도 30도 미만 → 평균경사도 25도 미만

나.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변경 (제23조)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으로 운영하던 규정을 조례로 정함
- 신청서 구비서류 규정 마련 : 신청서, 측량성과도, 매매계약서 등

다.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변경 (제24조의2)

- 주거지·도로·건축물 위 설치 등 입지 기준 변경
- 풍력발전시설 입지 기준 마련

제한내용	기 정	개 정
건축물 산정기준	- 주거용 건축물의 세대 수	- 주거용 건축물의 호수
도시지역	- 제한 없음	- 도시지역 내 제한
경사도	- 경사도 30도	- 평균경사도 15도 (15도 초과 전체 40% 이하)
예외규정	- 건물 위 태양광 : 가능	- 신청지 20m이내 타 주택지가 있을 경우 제한 (단 높이 2미터 이내는 가능)
	- 주택 1호 : 제한	- 신청인 주택만 있을 시 : 가능
풍력발전 이격거리	- 제한 없음	- 정온시설(학교 등) : 1.5km - 10호 이상 주거지 : 1.5km - 10호 미만 주거지 : 1.0km

라. 용도지구 통·폐합 및 명칭 변경(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부터 제52조까지)

○ 미관지구·경관지구 → 경관지구

○ 시설보존지구·보호지구 → 보호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

구 분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31조	제1종 자연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명칭변경
제32조	제2종 자연경관지구	조항 삭제	
제33조	제1종 수변경관지구	조항 삭제	
제34조	제2종 수변경관지구	조항 삭제	
제36조	전통경관지구	조항 삭제	
제38조	경관지구 건폐율	경관지구 건폐율	세부 지구 변경
제39조	경관지구 높이	경관지구 높이	세분 지구 변경
제40조	경관지구 규모	경관지구 규모	세분 지구 변경
제41조	경관지구 조경	경관지구 조경	세분 지구 변경
제42조	미관지구	조항 삭제	
제43조	미관지구 공지	조항 삭제	
제44조	미관지구 높이	조항 삭제	
제45조	미관지구 형태	조항 삭제	
제46조	미관지구 부속시설	조항 삭제	
제47조	학교시설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명칭 변경
제48조	공용시설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명칭 변경
제49조	공항시설보호지구	조항 삭제	
제5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조항 삭제	
제51조	주거환경보호지구	조항 삭제	
제52조	농·수산업지구	조항 삭제	

마. 녹지지역 등에서의 기존공장 증축 완화 (제59조의2)

○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증축을 2020년까지 한시적 완화

바. 수소연료 공급시설의 입지 완화(별표 6 ~ 10, 별표 21)

○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수소연료 공급시설 설치 가능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1월 1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73호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준용)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에서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함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1월 1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74호

예천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유·무형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신규 소득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활력플러스 사업”(이하 “신활력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사업계획”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말한다.
4. “중간지원조직”이란 각종 신활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지원조직을 말한다.

제3조(사업 범위) 이 조례에서 신활력사업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곤충 연구 인프라 구축, 곤충생태원 및 곤충관련 축제 활성화, 곤충산업 종사 지역주민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2. 지역주민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신산업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도시재생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3. 지역고유자원을 활용한 신상품개발, 시설장비고도화, 앵커기업유치, 민간 활동가 양성 및 조직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 사업

제4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활력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추진단이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발전하여 지속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신활력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추진단 설치 및 운영

제6조(설치) 군수는 신활력사업을 체계적·종합적·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인 추진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조직 구성) ①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운영한다.

②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되, 역량있는 민간 전문가로 한다.

③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액션그룹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8조(업무) ① 추진단은 신활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기획 및 발굴, 사업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2.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4.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5.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운영 등 사후관리

6. 군이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 ① 추진단은 원활하고 지속적 사업을 위하여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법인화 한다.

②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 인건비, 운영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운영을 위하여 지원 보조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0조(추진단의 의무) ① 추진단은 군과 신활력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은 수탁 받은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군 재산으로 귀속된다.

④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전담부서 또는 업무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민간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3조(추진위원회 설치) 신활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14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천군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추진단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활력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신활력사업 액션그룹 대표자
3. 자문위원 및 민간단체 대표
4. 지역 주민의 대표
5. 신활력사업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5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활력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
3. 제반 사업에 대한 조사·평가 및 중·장기 발전계획
4. 추진단 운영·관리 감독, 직원채용 및 감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활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군수는 신활력사업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8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예천군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내용

가.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범위(제3조)

-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신상품개발, 시설장비고도화, 앵커기업유치, 민간전문가 양성 및 조직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 사업 등

나. 추진단 구성 및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제7조 ~ 제9조)

- 추진단은 민간전문가인 추진단장, 사무국(사무국장 및 사무원 상근직), 코디네이터로 구성함
- 추진단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법인화 하며, 군수는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 인건비, 운영경비 및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음

다. 사업비 환수, 지도·감독에 관한 근거(제11조 ~ 제12조)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위반,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 허위 또는 부정방법으로 사업비 지원 받았을 때, 거짓 보고 하였을 때에 사업비를 환수 할 수 있음
- 군수는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과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 할 수 있음

라.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13조 ~ 제15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회는 신활력사업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

예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1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266호

예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무원 자신과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8. 군의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9. 공무원 자신과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0. 공무원 자신이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5조의6제1항 본문 중 “사행성 오락을 같이”를 “사행성 오락,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로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

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피감독기관 소속 공직자가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6조 제목 “(금전의 차용 금지 등)”을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로 한다.

제18조 전단 중 “알선·청탁”을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로, “경조사의 통지”를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 하며”를 “수립하고”로, “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정이유

「공무원 행동강령」(2018. 12.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사적이해관계 신고대상 추가 (제5조제1항)

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보완 (제5조의6제1항)

-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하는 행위’ 추가

다.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조항 신설 (제13조의3)

- 인·허가 신청 접수 지연·거부, 부당한 지시·요구, 권리·권한의 부당 제한 등 갑질행위

라.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 요구에 대한 처리 조항 신설 (제14조의4)

- 부당한 출장지원 요구, 과잉의전 제공 요구를 받았을 때 피감기관의 신고 서식 마련

마. 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대상 추가 (제18조)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2개 사항 추가

바. 행동강령 교육 내용 구체화 (제22조제3항)

- 향응·금품 수수금지,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금지 등 교육 내용 구체화

예천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1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267호

예천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예천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로 한다.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예천군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반드시 게재하여야 하고, 추가적으로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할 수 있다.

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대학의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대학이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장학생 선발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전체 학년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대학생인 경우에는 전체 학기의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제5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제6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에 대한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다만, 실기시험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제7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상북도지사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필기시험 과목) ①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은 3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고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공개경쟁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② 선발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

제9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증서를 교부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지급신청) 학교장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감면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전액 면제
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반액 면제

제13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생 지원 시부터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 관리서류 등)를 장학생 별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지원서					
① 성 명	한 글		② 생년월일		⑤ 사진 (3.5cm×5cm)
	한 자				
③ 현주소					
④ 재 적 교 학 교	학 (교)		학 과		
	학 년		전공과목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⑥성 명	⑦ 생년월일	⑧ 직 업	⑨ 주 소		⑩ 관계
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임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예 천 군 수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추천서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현주소				
재적학교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학(교)장 ○○○ 직인

예천군수 귀하

※ 성적증명서는 해당 학교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석차를 필히 명기

[별지 제3호서식]

재 정 보 증 서

장학 생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재적학교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친대 권리 자인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소			장학생과의 관계	

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명 ①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예 천 군 수 귀 하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수신 ○○학교장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귀교 학생이 ()년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30일 이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현주소						
재적학교	학교		학과		학년	
장학생 선발기록	증서번호			기타		
	수여일자					

붙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1 부. 끝.

예 천 군 수

직인

증서번호 제 호

장 학 증 서

○○학(교) ○○학과 ○학년
성 명 : ○ ○ ○

위 학생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이 장학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직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 신청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신 청 내 역				
장 학 생	성 명		학 년	
신청내역	계	원		
	입 학 금	원		
	등 록 금	원		
	기 타	원		
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학 교 장

직인

예 천 군 수 귀 하

[별지 제7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

성명 (한자)	()	생년월일	
------------	-----	------	--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주 소	세대주	주 소	세대주

2. 가족사항(직계존비속)

성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	성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	※ 기타특기사항

3. 재정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관 계

4. 관리기록

지원~선발	학 교 명		학 년		전공학과		
	지원일자		선발일자		선발당시 성 적	평균 점(석차 /)	
장학금 지 급	지 급 일	지 급 액	누 계		지 급 일	지 급 액	누 계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5. 학사관리 (※ 장학규정 제12조 관련사항 기록)

년 월 일	적 요	년 월 일	적 요

6. 임용상황

임 용				임 용 대 기	임 용 포 기
일 자	계 급	직 렬	기 관(계단위까지)	<사유>	<사유>

7. 장학금 반납 (※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

지급총액	
------	--

년 월 일	반 납 액	잔 액	년 월 일	반 납 액	잔 액

8. 기타 특기사항

※ 연락 전화번호 자택 () 학교 ()

[별지 제8호서식]

○ ○ ○ 학 교

수신 예천군수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 결과 통보

본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재 학 생 본 인		지 급 시 일	지 급 액				수령인	비 고
학 년	성 명		계	입학금	등록금	본인지급		

끝.

○ ○ ○ 학 교 장

직인

[별지 제9호서식]

○ ○ ○ 학 교

수신 예천군수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 (○/○분기말) 성적통보

본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의 학기말(○/○분기말) 성적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가. 성 명 :

나. 학 과 :

다. 학 년 :

2. ○학년 ○학기말 (○/○분기말) 성적

성 적 사 항				출 석 사 항	
과 목	성 적	과 목	성 적	구 분	일 수
				총수업일수	
				출 석	
				결 석	
				결석율(%)	
				기타 특기사항 (상벌사항 등)	
평 균		석 차	/		

끝.

○ ○ ○ 학 교 장

직인

[별지 제10호서식]

○ ○ ○ 학 교

수신 예천군수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발생통보

본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중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가 발생하였기에 통보합니다.

1. 장학생 인적사항

가. 성 명 :

나. 생년월일 :

다. 학 과 :

라. 학 년 :

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규정」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의 사유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 ○ ○ 학 교 장

직인

◇개정이유

공직 채용 공정성·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감안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주요내용

가.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를 규정 (제2조)

- 신규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로 명시하여 선발직렬 구체화

나. 장학생 선발공고 등 선발시험 홍보 강화 (제3조)

- 지자체 홈페이지, 지자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게재 필수

다. 선발기준 강화 (제6조)

- 장학생 선발의 형평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 실시로 최소한 경쟁논리 도입

※ 필기시험은 3과목 이상, 공채 과락기준 준용, 실기시험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라. 장학금의 지급 범위를 규정 (제10조)

- 입학금,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

마. 장학금 반납 감면 사항을 규정 (제12조)

- 전액 면제 : 본인의 사망, 공무로 인한 질병 및 심신장애
- 반액 면제 :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

예천군 통계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9년 11월 1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훈령 제417호

예천군 통계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예천군 통계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 관 별 통 계 심 사 관

기 관 명			통 계 심 사 관
군	본 청		행 정 지 원 실 장
	사 업 소	과가 있는 사업소	서 무 담 당 과 장
		기 타 사 업 소	서 무 업 무 담 당 주 사
읍 면	읍 . 면		총 무 업 무 담 당 주 사

◇개정이유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19.09.19.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관별통계심사관의 명칭을 총무과장에서 행정지원실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 기관별통계심사관 명칭 변경
 - 총무과장 ⇨ 행정지원실장